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20호('20. 6. 29.)

관세청고시 제2020-00호('20. 00. 0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10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업체)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단서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물품)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 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

한다)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0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에 따른 검사결과가 [별표]에 해당되는 경우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2.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사비용 지원신청 이전까지 체납된 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검사장소)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 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

제5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3조 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항목별 검사비용”이라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입료

제6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항목별 검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할 수 있는 검사비용 기준(이하 “검사비용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세관관할 지역별 또는 전국세관단위로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 2월에 공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비용 지급액은 제2항에 따라 세관별로 조사된 컨테이너 검사비용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에 대하여 화주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세관별로 조사한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효과적인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 검사비용 지급기준 산정과 제11조에 따른 정확한 검사비용 심사를 위하여 부두운영사 및 운송업체 등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검사비용 지원 신청인)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하여야 한다.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기간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검사비용 신청서 처리 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인은 운송인 등에게 지급한 검사비용에 대해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와 수입신고번호,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번호 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세관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하 “전자통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다만, 가상계좌는 제외한다.

4.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의 지급신청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 ①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취하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 신청 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된 권리가 취소나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비용지원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의 내역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때

제11조(지원요건 및 금액 심사) ①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및 첨부서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와 검사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 일치 여부
2. 법령위반 사실 등 신청물품 검사결과와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
3.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적정 여부
4.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

5.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및 금액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 신청금액과 제6조제2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준 및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액 결정 후, 검사비용 잔액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하여 검사비용 지급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검사비용 신청금액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청구한 부두운영사 및 운송업체 등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비용 심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세관의 부서 직원과 동행할 수 있다.

제12조(증빙자료 보완요구 등) ① 세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보완요구 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이미지 파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자료를 심사한 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자료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내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각하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류 및 중단) ① 세관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검사 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기한 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예산 확보 시 지급액을 확정하고,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며,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 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 및 환수) ① 세관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다운로드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다지급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즉시 반납처리해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검사비용 지급 건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할 때 오류가 있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업무 수탁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과다 지급금 환수 절차 등) ① 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액 결정에 착오가 있어 과다 지급되거나 지급 결정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안 경우 또는 적정하게 신청된 검사비용이 과소하게 지급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급한 세관에 통보하여 화주로부터 과다 지급금을 즉시 환수하게 하거나 화주에게 부족한 지급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추가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당초 지급 결정액과 지급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금액 정정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과다 또는 과소지급 검사비용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사무)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6항 및 영 제288조제10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제9조부터 제13조 및 제15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활한 검사비용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검사비용 심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검사비용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 심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업무 심사·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장에게 결재를 상신한다.

③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결재가 상신된 검사비용 신청 건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을 확정 한 후 지급액이 과다 또는 과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는 세관장으로부터 제14조제3항에 따른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보완·정정한 후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잔액 관리) ①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의 각 세관별 검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세관의 예산지출 상황에 따라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과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지급액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잔액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보안유지 등) ①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 시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법 제330조제7호에 따라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기간 및 자료보완기간 등은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검사비용 지급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준의 공고는 2020년도의 경우 6월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

구 분	검사결과		
	구분	번호	위반사항
제3조제1항 제1호 물품 (관리대상화물)	1. 검색기검사	1-①	타기관 이첩(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 즉시검사 (검색기검사 후 개장검사 포함)	2-①	안보위해물품, 금지품 위장수입 적발(고발의뢰)
		2-②	품명위장·타물품혼입밀수(고발의뢰)
		2-③	위험물품·검역물품 등 적발(고발의뢰)
		2-④	수량·종량 과부족(고발의뢰)
		2-⑤	상표권등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물품(고발의뢰)
		2-⑥	원산지 표시 위반(고발의뢰)
제3조제1항 제2호 물품 (부두직통관화물)	1. 품목분류 위반	1-①	고세율 품목으로 세번변경(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1-②	내국세 해당품목으로 세번변경(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2. 수량·종량상이	2-①	수량·종량 과·부족(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2-②	무단반출(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3. 세율(액) 적용 위반	3-①	동일세번내 고세율로 변경(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3-②	동일세번내 내국세 부과(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4. 관세감면·분납 적용 위반	4-①	감면불허(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5. 가격신고 위반	5-①	가격·운임·보험 등 누락과표 과세(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6. 품명위장	6-①	수입금지품 위장수입
		6-②	미신고물품 위장수입
	7. 세관장확인 사항 위반	7-①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동일세번)
		7-②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세번변경)
		7-③	수입요건확인서류 허위구비(고발의뢰, 통고처분)
		7-④	수입요건확인서류 미구비(고발의뢰, 통고처분)
	8. 국민건강·사회안전 적발	8-①	마약류 적발(고발의뢰)
		8-②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고발의뢰, 통고처분)
		8-③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통관보류 등 기타조치)
		8-④	국민건강·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고발의뢰, 통고처분)
		8-⑤	국민건강·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통관보류 등 기타조치)
		8-⑥	기타 국민건강·사회안전 등 침해물품 수입(통관보류)
	9. 원산지표시 위반	9-①	원산지 미표시
		9-②	원산지 허위표시
		9-③	원산지 오인표시
		9-④	원산지 표시 부적정
		9-⑤	원산지 표시 손상
		9-⑥	원산지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10.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10-①	허위표시 (통관보류)
		10-②	오인표시 (통관보류)
	11. 상표권 위반	11-①	위조상표 부착물품 수입(자체조사, 고발의뢰 또는 통관불허)

구 분	검사결과		
	구분	번호	위반사항
		11-②	상표권 침해(진정상품)(통관불허)
	12. 기타 지식재산권 위반	12-①	상표권 이외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13. 협업·분석 검사	13-①	불법제품(미인증, 허위표시, 미표시, 기타위반표시)
		13-②	불량제품(부적합제품)
		13-③	유해성분기준치 초과
		13-④	인증결과 고발의뢰(통고처분 포함)
	14. 방사능 검사(표면 방사선량을 측정)	14-①	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15. 수리 후 분석 및 품목분류 질의	15-①	수리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16. 정밀검사	16-①	파괴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16-②	비파괴 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제3조제1항 제3호 물품 (수출적재지 검사화물)	1. 품목분류 상이	1-①	세번 상이(환급대상)
	2. 수량·중량 상이	2-①	수량·중량 과(부)족(고발의뢰)
	3. 원산지 지정 위반	3-①	원산지 허위 표시
		3-②	원산지 오인 표시 및 표시 부적정
	4. 지식재산권 위반	4-①	위조 상표 수출(고발의뢰)
		4-②	상표권 침해
		4-③	저작권·의장권 등 위반(고발의뢰)
	5. 위장 수출	5-①	수출금지품 위장 수출
		5-②	미신고물품 혼입 및 위장 수출
	6. 현품검사 곤란	6-①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로 현품검사 곤란
		6-②	미제조로 현품검사 곤란
	7.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7-①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미준수
	8. 중고차량 불법수출 위반	8-①	차대번호 상이 신고
		8-②	기수출 차량 신고 오류
		8-③	도난범죄 차량 적발
	9. 수리 후 분석	9-①	정확한 품목분류 곤란 또는 성분분석을 요하는 물품
	10. 신고 오류	10-①	신고물품 일부(전체) 누락 신고 오류
	11. 거래구분 지정	11-①	원상태 수출 부적정
		11-②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12.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	12-①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개 미만)
		12-②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9개)
		12-③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10개 이상)

※ [별표] 제3조제1항제1호 물품의 검사결과 “1-①”, 제3조제1항제2호 물품의 검사결과 “8-③”, “8-⑤”, “15-①” 및 제3조제1항제3호 물품의 검사결과 “9-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한 후 최종 검사결과가 [별표]의 검사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당초 검사결과 포함)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 중소기업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을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역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① 신청번호		② 신청일자	년 월 일
③ 검사 세관	☐ 인천, ☐ 부산, ☐ 평택, ☐ 군산, ☐ 광양, ☐ 포항, ☐ 울산, ☐ 기타		
④ 신청 구분	☐ 관리대상화물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 부두직통관화물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 적재지검사화물	(수출신고번호:)	
⑤ 신청관세사 :		⑥ 관세사부호 :	⑦ 연락처 :

* “⑤, ⑥ 관세사” 란은 화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 생략

2. 수출입 화주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통관고유부호	
⑤ 주 소		⑥ 연락처	

3. 지급계좌

① 예금주		② 은행명	
③ 지급계좌번호		④ 실지명의번호	

* “④ 실지명의번호” 란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4. 검사비용

① 운 송 비	원	② 상·하차료	원
③ 적출입료	원	④ 합 계	원

5. 컨테이너

① 컨테이너 번호		② 컨테이너(개수)	20FT(), 40FT(), 기타()
-----------	--	------------	----------------------------------

「관세법」 제1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 삭 제 > 2. < 삭 제 > 3.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다만, 가상계좌는 제외한다. 4.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신청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함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 부두운영사, 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② 포워더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 : <u>원칙적으로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u>
-------------	--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작성례
1. 신청내역	① 신청번호는 세관기재란으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일자(신청시 “년 월 일” 을 기재합니다.	○ 2020년 8월 25일
	③ 검사를 실시한 세관을 “선택” 하여 표시를 합니다.	○ “부산” 선택
	④ 검사를 실시한 화물의 종류에 “선택” 하여 표시를 하고, - 관리대상화물은 화물관리번호(19자리이내), 수입신고번호(14자리) 모두기재 - 부두직통관화물은 화물관리번호(19자리이내), 수입신고번호(14자리) 모두기재 - 적재지검사화물은 수출신고번호(14자리)를 “-”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관리대상화물” 선택 ○ 관리대상 및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 화물관리번호: 20HXC5470182500726 - 수입신고번호: 1225120201772M ○ 적재지검사화물의 경우 - 수출신고번호: 4284520050033X
	⑤ 신청한 관세사명을 기재합니다.	○ (주)우리들 관세(※화주신청시 생략)
	⑥ 관세사 부호 5자리를 기재합니다.	○ 12345(※화주신청시 생략)
	⑦ 신청인의 사무실 및 휴대폰번호를 기재합니다.	○ 00-2154-7484 및 123-456-7891
2. 수출입 화주	① <u>화주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합니다.</u>	○ <u>○○물산(주)</u>
	②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1234567890
	③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홍○○
	④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합니다.	○ 갑을병정4567890
	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전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25번지
	⑥ 신청인의 사무실 및 휴대폰번호를 “-”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0021547484 및 1234567891
3. 지급계좌	① 사업자 명의 통장계좌의 예금주를 기재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 법인사업자: ○○물산(주) ○ 개인사업자 - 홍○○(ABC네트워크) 또는 홍○○
	② 통장개설 은행을 확인 한 후 거래은행을 선택합니다. 1. 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국민은행, 4. 외환은행, 5. 수협, 6. 농협, 7. 지역농축협, 8. 우리은행, 9. SC제일은행, 10. 한국씨티은행, 11. 대구은행, 12. 부산은행, 13. 광주은행, 14. 제주은행, 15. 전북은행, 16. 경남은행, 17. 새마을금고, 18. 신협, 19. 상호저축은행, 20. 우체국, 21. KEB하나은행, 22. 신한은행, 23. 산림조합중앙회 계좌에 한함	○ ○○은행
	③ 통장계좌번호를 “-”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54178413333
	④ 사업자 통장개설 할 때의 실지명의* 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7234567890123
4. 검사비용	①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운송비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40,000
	②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상·하차료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20,000
	③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적출·입료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250,000
	④ 합계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u>- 다만, 세관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로써 항목별 검사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검사비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상 합계금액을 운송비로 일괄하여 신청 가능</u>	○ 항목별 검사비용이 구분되는 경우 - 자동계산: 310.000원
5. 컨테이너	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합니다.	○ 컨테이너 번호 입력: PUTY24877
	② 컨테이너 종류를 선택하고 개수를 기재합니다.	○ 컨테이너 종류와 개수 입력: 40FT(2)
※ 처리기간	1.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지급 2.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검사비용 지급 신청 정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내역			
신청번호 (차수)	×××××-××-×××××××(1)	신청일자	(yyyy-mm-dd)
신 청 인	(상호) (성명) ☐ 화주 ☐ 관세사		
정정신청일자	(yyyy-mm-dd)		
신청사유			
2.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 내역 정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검사비용 지급 신청 취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내역			
신청번호 (차수)	×××××-××-××××××××(1)	신청일자	(yyyy-mm-dd)
신 청 인	(상호) (성명)	☐ 화주 ☐ 관세사	
취하신청일자	(yyyy-mm-dd)		
신청사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 내역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보 완 요 구 서

문서번호 : XXX(세관)-보완-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 신 처 : (신고인)XXX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X

위 신청건에 대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완요구하오니 YYYY-MM-DD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 내역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보완요구 사항

가. 보완요구 사유 : XXXXXXXXXXXXXXXXXXXX

나. 보완요구 사항 : XXXXXXXXXXXXXXXXXXXX

담당자 : XXXXX

연락처 :

[별지 제5호서식]

각 하 통 보 서

문서번호 : XXX(세관)-각하-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 신 처 : (신고인)XXX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X

각하사유 :

위 신청건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각하 통보합니다.

담당자 : XXXXX

연락처 :

[별지 제6호서식]

보 류 통 보 서

문서번호 : XXX(세관)-보류-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 신 처 : (신고인)XXX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X

보류사유 :

위 신청건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지급 보류를 통보합니다.

담당자 : XXXXX

연락처 :

[별지 제7호서식]

중 단 통 보 서

문서번호 : XXX(세관)-중단-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 신 처 : (신고인)XXX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X

중단사유 :

위 신청건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지급 중단을 통보합니다.

담당자 : XXXXX

연락처 :

검사비용 지급금액 정정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1. 통보내역			
신청번호	×××××-××-××××××××	신청일자	(yyyy-mm-dd)
신 청 인	(상호) (성명)	☐ 화주 ☐ 관세사	
통보일자	(yyyy-mm-dd)		
통보사유			
2.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 내역 정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 세관부호-년도-XXXXX(일련번호)

통보일자 : YYYY-MM-DD

붙임: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 1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오니,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장

○ ○ 세 관 장